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보 도 참 고 자 료	보다나은 정부

2019년 10월 10일(목) 09: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배포일시	2019. 10. 9(수)	담당부서	통상분쟁대응과
담당과장	정하늘 과장(044-203-4880)	담 당 자	김효중 사무관(044-203-4887)

일본 수출제한조치 WTO 양자협의 개최 예정 (10.11, 제네바)

□ 한·일 양국은 일본 수출제한조치 WTO 분쟁(DS590)의 양자협의를 10월 11일 제네바에서 진행하기로 합의함.

* 우리 정부는 9.11 일측의 수출제한조치를 WTO에 제소(양자협의 요청)하였으며, 양국은 WTO 분쟁해결양해 규정(DSU 제 4.3조)에 따라 양자협의 요청 접수 후 30일내 또는 양국이 달리 합의한 기간 내에 양자협의 개시 필요

○ 지난 9월 20일 일측이 우리측 양자협의 제안을 수락한 이후 양국은 외교 채널을 통해 일시·장소 등 세부사항을 논의해 왔으며, 국장급을 수석대표로 WTO 양자협의를 진행하기로 함.

* 우리측 수석대표 :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

□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 제한조치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임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분쟁대응과 김효중 사무관(☎ 044-203-4887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1 우리측 양자협의요청서 주요 내용

□ **(제소대상) 3개 품목**(① 플루오린 폴리이미드, ② 포토레지스트, ③ 불화수소)에 대한 **일본**의 **對韓 수출제한조치**

○ 일본은 **3개 품목**의 **對韓 수출**시 **포괄허가제**를 **개별허가제**로 **변경 공표**(7.1)·**시행**(7.4~)

□ **(법적근거)** **(상품)** GATT 1조·11조·10조 등
(기술) TRIMS 2조, GATS 6조, TRIPS 3·4·28조

【 양자협의요청서 주요 내용 】

일본 조치	• 3개 품목 및 관련 기술이전시, – 기존 포괄허가 사용 불가(7.4일자로 효력 소멸) – 개별허가 신청 의무화 – 日 경제산업성 본청에서만 개별허가 접수 (지역 심사국에 신청 불가) – 개별허가 관련 복잡한 수출절차 의무화
주요 위반근거	• 3개 품목 수출규제 관련, – 상품무역에 관한 일반협정(GATT) 제1조·제11조·제10조 등 – 무역원활화협정(TFA) 제2조·제6조·제7조·제8조·제10조 등
	• 3개 품목에 관한 기술이전 규제 관련, – 무역관련 투자조치에 관한 협정(TRIMs) 제2조 –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(TRIPS) 제3조·제4조·제28조 –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(GATS) 제6조

붙임 2 **WTO 분쟁절차도**

